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8
----------	----------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국적 시행(2023.1월)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답례품(안 제2조~제5조)
- 다. 고향사랑기금(안 제6조~제17조)
- 라. 부칙(부칙안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1) 「강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3)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2. 9. 28. ~ 2022. 10. 18.)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시 성별 고려 사항 반영  
답례품 선정 시 여성기업의 생산품 선정 반영
- 5)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조례 최종안 반영 결과
  - 제3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에서 ‘기금’ 사용 미반영
  -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금융기관 위탁에 따른 시행령 근거 명시, 특히 제3호의 경우 ‘본인여부 등의 확인’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으로 구체화
  - 제7조제1항 기부금 모집 시 사업을 지정하여 모금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제2항 모집 및 운용을 위한 비용지출 강행규정을 임의 규정화함
  - 제12조 위원장 권한 및 업무대행 규정 신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답례품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비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제1항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법 제 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고향사랑기금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과 기금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1명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금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전년도 기부금이 발생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 고향사랑 기부제도 전국 시행에 따라 강서구에 기부하는 자를 위한 답례품 제공비,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4. 작성자

성명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담당: 행정8급 최유진)
연락처	02.2600.6039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2-34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완주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통보(조치)일		2022. 10.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조례 제정안 전부		원안 동의		없음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국적 시행(2023.1월)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답례품(안 제2조~제5조)
- 다. 고향사랑기금(안 제6조~제16조)
- 라. 부칙(부칙안 제2조)

## □ 검토의견

- 동 제정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서울강서043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전세은	전화번호 02-2600-604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0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전국적 시행(2023.1월)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답례품 제공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 제2조제2항의 우선구매대상 선정과 관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를 비롯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아래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참고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② 삭제 ※참고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부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을 준용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촉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참고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2.(생략) 3. 장애인단체,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5. (생략)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2.(생략) 3.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5. (생략)	종합검토의견 참고
2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생략)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자	종합검토의견 참고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생략)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생략)	
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b>성별을 고려하여</b> 구성한다. ②~③(생략)	종합검토의견 참고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11월 2일 까지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자치행정과장 귀하

**□ 「강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7. 8. 2.)